

#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행정지원과

제정 2022·11·11 조례 제1869호  
일부개정 2023·9·27 조례 제1981호  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 
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이천시 원로자문회의(이하 “원로회의”라 한다)는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.

1.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2.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3.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 및 자격)**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② 원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필요 시 의장이 지명한다.

③ 원로회의의 위원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·9·27>

1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
2.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

**제4조(명예위원)** 시장과 이천시의회의장은 원로회의의 명예위원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의장의 직무)**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,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원로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무처리)** ①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원로회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
3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0조(의견청취)**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지원 및 예우 존중)** 시장은 원로회의 위원의 시정자문에 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9·27 조례 제1981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 
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